

**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**  
**일부개정법률안**  
(윤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09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6.

발 의 자 : 윤영석 · 이상휘 · 백종현  
서천호 · 박성민 · 박덕흠  
정동만 · 조경태 · 김미애  
이종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은 고령화에 따라 생활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,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요양(돌봄) 서비스까지 연계된 거주복지가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음.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의 양로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지역·공급 측면에서 지원이 제약될 수 있고, 민간·비국공립 시설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. 특히, 양로시설은 주거·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, 요양시설은 장기요양·노인 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.

이에 “양로지원”을 “양로·요양지원”으로 확대하고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·운영 시설로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는 한편, 그 외 양로·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에

대한 거주복지의 현실 적합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70조).

##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의 제목“(양로지원)”을“(양로·요양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전단 중 “국가의 양로시설에서”를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양로·요양시설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·요양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양로·요양시설 외의 양로·요양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,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.





로 · 요양시설 외의 양로 · 요양  
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,  
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  
한다.